

Chapter 5. PR INSIGHT II

# 양재규의 Law119

글 |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s92@gmail.com](mailto:eselltrees92@gmail.com)



## 오프더레코드는 약정일까, 신사협정일까: 비보도 약속의 법적 구속력 유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민사법의 기초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유명한 법언(法言)이다. 과연 기자와 취재원 간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고, 지켜져야 할까? 취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킬 것이라 믿었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통한다. 기자와의 신뢰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 유지는 필수적이다.

**Q**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 언론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기자들은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무시하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하며 압박을 한다. 이에 관리 차원에서 ‘대외비’ 조건으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약속을 깨뜨리고 보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프더레코드’라고 하고 대화나 통화한 내용이 기사화되는 바람에 홍보담당자가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약속을 어긴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A** 우리가 흔히 ‘약속’이라 여기는 것들 중에는 법적인 의미의 약속, 그러니까 ‘약정(agreement)’ 내지는 ‘계약(contract)’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약속을 법에서는 ‘신사협정’이라고 부른다. 기업이나 단체 간 체결되는 업무협약(MOU) 중에는 신사협정에 해당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물론, 모든 업무협약(MOU)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신사협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인지는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며 구체적인 협약사항을 살펴야 한다.

신사협정과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구속력 유무에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강제적인 의무이행 촉구,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사협정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문자 그대로, 신사협정을 깨뜨린 사람은 더 이상 신사(gentleman)가 아닐 뿐이다. 신사협정 위반에

뒤따르는 것은 도의적 비난과 사회적 신뢰·명성 상실 정도다.

그렇다면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신사협정과 계약 중 어디에 해당할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해당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안타깝지만, 약속의 경위·방식·내용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기자와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현장에서 홍보담당자들의 의사는 그저 ‘말’로 전달될 뿐이다. 대외비로 해달라거나 ‘오프더레코드’여야 한다고 말한다. ‘말’은 애당초 ‘문서’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가볍고, 덜 진지한 의사전달수단이다.

말하는 과정에서 기자로부터 다짐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약속 위반 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언급도 일절 없었을 것이다. 계약이 되려면 최소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해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약속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사항에 대해 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약속을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 내지 계약으로 격상시키는 방법이다.

대언론관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약속 몇 가지가 있다. ‘오프더레코드’, ‘백브리핑’, ‘엠바고’ 등이다. 용어는 제각각이지만, 이 말들에는 기자에게 바라는 취재원의 어떤 희망사항이 담겨 있다. 어느 시점까지 보도가 유예되기를 바라고, 건네준 자료를 참고만 하고, 기사에 직접 인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법은 과연 취재원들의 이러한 희망사항을 지켜줄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건은 법적 구속력 유무인데 약속의 경위·형식·내용 등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있다는 쪽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엠바고’의 법적 구속력이 법정에서 한 차례 다루어진

적이 있다. 우리에게 ‘석해균’ 선장 혹은 ‘이국종’ 교수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2011년 삼호주얼리 구출 작전 관련 <부산일보> 보도 재판이다. 우리 군의 1차 구출 작전이 실패한 이후 국방부가 관련 사실에 대한 엠바고를 걸었음에도 <부산일보>는 보도했다.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정부는 <부산일보>에 1개월간 모든 부처 기사실 출입제한 및 보도자료 제공 중지 처분을 내렸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엠바고를 신사협정으로 보고 언론에 보도유예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3841). 다만, 이 소송에서 부산일보는 결과적으로 패소했다. 엠바고 때문은 아니었지만 보안상의 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등을 위해 보도를 유예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자와의 약속을 법이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사화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면 아예 언급하지도 말아야 한다. 기자의 압박이 심하다면 타협이 아닌, 유사언론행위로 문제 삼는 편이 낫다. 기자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